

—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소관변경, 법률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규정과 발급 실적이 없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 하되 법률 개정으로 추가하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시스템기를 통한 수수료 등의 근거를 마련.

다. 주요내용

- 업무소관 변경으로 발급 불가능한 징수 규정 삭제
- 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
- 상위법 규정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 삭제
- 근거 규정 폐지 등으로 없어진 민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
- 발급 실적이 없는 수수료 규정 삭제

- 법령 개정 사항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수수료 규정 신설
- 규제완화를 위해 수수료 반환 않는 조항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감사07000-435(2000. 6.8) 관련 서류
- 구미 감사07000-395(2000. 6.28) 관련 서류
- 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시제증명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6조를 삭제하고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에 대한 수수료와 법령개정으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- 또한 상위법에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열람 수수료 및 병역법 시행규칙,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한 사항 등은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